C - 33 - 2022

## 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2. 12.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

○ 개정사유 :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직무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(시행 '21.11.19., 고용노동부령 제337호)사항을 반영하고, 작업 전 고정점이

없는 지붕, 옥상에서의 안전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

- 주요 개정내용
  - 3. 용어의 정의 "고정점" 신설
  - <그림 1> 그림 수정 "고정점 2개소 이상"
  - <그림 3>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순서 추가 "작업전 지붕위 안전조치 및 확인 사항"
  - 4.2.3 고정점이 없는 옥상, 지붕에서의 안전조치 사항
    -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2항의 제3호, 제4호, 제5호
  - 5.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시 안전준수사항의 5.1 준비작업에 "작업 전 옥상, 지붕위에서의 안전조치 기준 마련"
    - ┗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
  - 6. 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직무수행 사항
    - ┗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동 규칙 [별표2] 10.